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197
------	-----

2022. 9. 23.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9.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정수용)

1. 제출이유

가. 서울시는 전문적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나. 이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나. 사무명 :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다. 추진근거

-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라. 출연의 필요성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진단, 임직원교육, 경영지도·컨설팅, 정책연구 등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지원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도모

마. 주요사업 내용

- 지방공기업 정책 개발 및 연구지원
- 지방공기업(광역+기초)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등 수행
- 지방공기업·출연기관 컨설팅 지원
- 지방공기업 설립·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법정전담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법정전담기관)
-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 및 채용대행 사업

- 지방공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임직원 전문교육

바. 출연대상 기관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 법인설립 : 1992. 3. 2.

※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법정기관 전환(2016. 6)

- 조직 : 1단 4실 2센터 / 정원 65명 ※현원 64명

- 이사회 구성 : 이사 9명, 감사 1명

- 시설현황 : 건물(지상6층) 연면적 2,550m², 부지 640m²

- 위치도

청사현황	위치도
	

사. 소요예산(안)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7천 8백만원

- 산출근거 : 경상운영비 5천만원, 사업비 2천 8백만원

3.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세출예산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됨.

나. 지방공기업평가원 현황 및 출연 근거

-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출범(지방자치경영협회, 1992년)한 '지방 공기업평가원' (이하 "평가원")은 2016년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컨설팅, 정책연구, 교육연수 등을 수행하는 법정기관이 됨(제78조의4)¹⁾.
 - 현재 조직은 1단 4실 2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원 12명²⁾, 직원 64명(정원 65명), 전문연구인력 447명³⁾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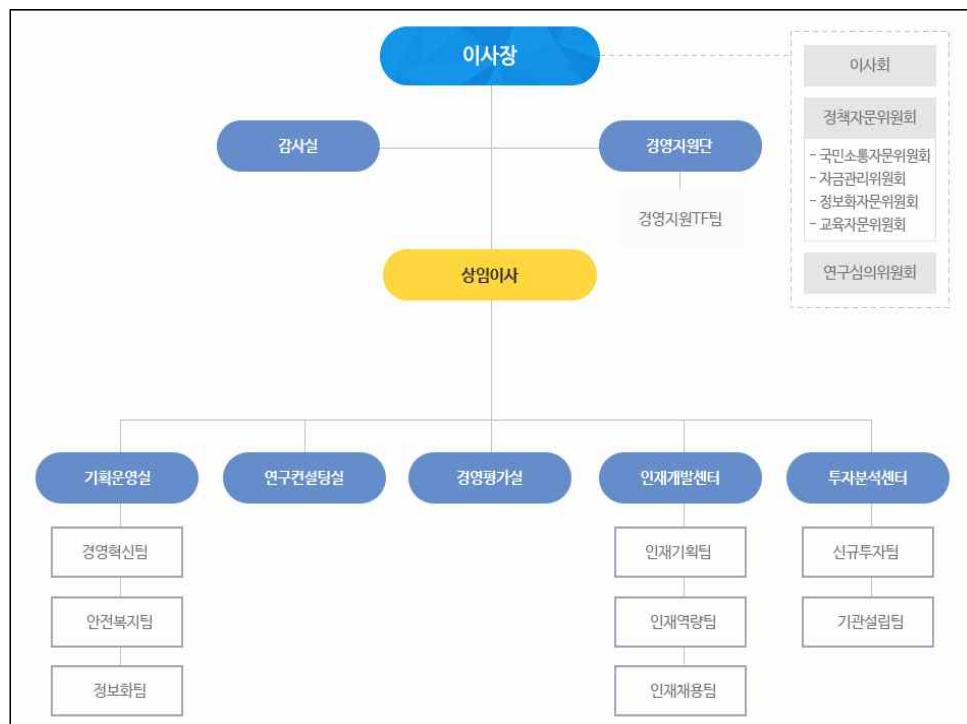
1)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당연직이사 5명, 위촉직이사 4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2022년 8월 현재 위촉직 이사 2명이 공석임.

3) 상근연구인력 37명, 자문위원 50명, 경영평가단 160명, 연구지원 200명임.

- 평가원 정관⁴⁾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과 시·도 기획 조정실장 중 5명이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며, 서울시는 순서에 따라 2027~2028년 비상임이사를 맡을 예정임.

〈지방공기업 조직도〉



- 서울시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타 시·도와 지방공기업(370개 기관)과 함께 평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고 있음.

4) 제18조(임원의 선임) ③ 비상임이사는 당연직이사와 위촉직이사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직에 취임한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되고, 당연직 이사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1.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2.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의 기획조정(관리)실장 4~5인(윤번제로 선임)

다. 평가원에 대한 출연의 적정성 검토

- 평가원의 2023년도 수입예산 163억 1천만원(추정치) 중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공단 출연금은 43억 8천만원(26.8%)이며, 자체 사업수입은 115억 3천만원(71%), 임대료 수입 등은 4천만원(0.2%)임.
- 전체 출연금 중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출연금은 10억원 8백만원이고, 나머지 35억 3천만원은 지방공사·공단이 부담⁵⁾할 예정임.
- 광역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출연금은 시·도 재정력지수(50%)와 공기업수(50%)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서울시는 재정력지수 1.069(4구간, 4천 2백만원), 공기업수 32개(3구간, 3천 6백만원)에 해당돼 2016년부터 계속해서 7천 8백만원을 출연하고 있음.

<시·도별 출연금 산정기준>

구간	재정력 지수	구간금액 (백만원)	구간	공기업수	구간금액 (백만원)
0.5 (2구간-40%)	세종, 제주	18	0.5 (2구간-40%)	세종, 제주	18
1 (2구간-40%)	0.50이하 ~	24	1 (2구간-40%)	1~15	24
2 (기준구간)	0.5~0.70이하	30	2 (기준구간)	16~25	30
3 (2구간+20%)	0.7~0.90이하	36	3 (2구간+20%)	26~35	36
4 (2구간+40%)	0.9초과 ~	42	4 (2구간+40%)	36~	42

5) 2017년부터는 지방공기업도 매출액(50%), 직원수(30%), 자산(20%)을 기준으로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경우 2022년도에 6억 1천만원 규모의 출연금을 부담할 계획임.

<주요 시도별 출연금 배분금액>

(단위: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수		
	202	2022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 (A)	수	구간	금액 (B)
서울특별시	78	78	-	1.069	4	42	32	3	36
경기도	84	84	-	1.032	4	42	97	4	42
인천광역시	60	60	-	0.786	3	36	15	1	24
부산광역시	60	60	-	0.750	3	36	9	1	24

- 서울시 출연금은 지방공기업의 정책개발, 임직원 전문교육 등을 위한 전문인력(37명)의 인건비 5천만원과 시·도 등 지원사업비(정책연구, 컨설팅, 발전사업) 2천 8백만원으로 집행됨.

<서울시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세부산출 내역
계	78,000	
경상운영비	50,000	
인건비	50,000	
기본급	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000천원 × 5% (전문직 37명) 지방공기업·출연기관의 정책 개발 및 연구지원, 경영평가, 컨설팅 지원, 임직원 전문교육 전문인력(37명) 인건비
시도등지원사업비	28,000	
정책연구	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전문가 보상비, 인쇄비, 회의비, 포럼 등
컨설팅	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전문가 보상비, 인쇄비, 회의비 등
발전사업	1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CEO 및 신규입사자, 온라인 등 무료교육

- 최근 3년간 평가원의 서울시 관련 추진사업을 보면,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컨설팅, 정책연구와 전문교육 등을 수행함.

<최근 3년간 지방공기업평가원 관련 서울시 출연금과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연도	출연금 규모	시도 출연금	서울시 출연금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
2020	4,279	1,014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총 30개 기관(하수도,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24개 자치구 시설공단) · 정책연구 : 총 32개 과제 수행 · 컨설팅 : 9개 기관, 9건(성동문화재단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등) · 역량강화 전문교육 : 416개 과정 23,639명 · 법무·노무·세무 등 자문 : 15건(강남구도시관리공단 '노상주차장 공단 시설물 설치' 등)
2021	4,346	1,014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총 30개 기관(상수도,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24개 자치구 시설공단) ○ 정책연구 : 총 23개 과제 수행 ○ 컨설팅 : 11개 기관, 11건(시설공단 '지방공기업 ESG 경영 지원' 등) ○ 역량강화 전문교육 : 678개 과정 31,187명 ○ 법무·노무·세무 등 자문 : 18건(기술연구원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자문 등)
2022.7월	4,383	1,008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총 31개 기관(하수도,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24개 자치구 시설공단) ○ 정책연구 : 총 7개 과제 수행 중 ○ 컨설팅 : 16개 기관, 24건(주택도시공사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지원' 등) ○ 역량강화 전문교육 : 657개 과정 19,661명 ○ 법무·노무·세무 등 자문 : 10건(평생교육진흥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문의' 등)

- 이처럼 평가원은 서울시 공기업과 출연기관 등에 대한 정책연구나 법·제도·자문, 경영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17개 시·도 모두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는 등 출연금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지방공기업 정책연구의 경우 자체기획과 행정안전부의 요청

으로만 추진되고 있으므로 17개 시·도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에 상응하는 연구 결과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2022년 지방공기업 정책연구 상반기 추진현황>

연구과제명	제안주체
• 대전환기, 지방공기업 혁신방향과 과제	자체기획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자체기획
• 공공서비스의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초연구 : 도시철도공사를 중심으로	자체기획
• 지방공기업 직무표준 개발 연구 : 시설관리공단	자체기획
• 정책선도형 경영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및 지표 개선 연구	행정안전부
• 지방출자출연기관법제 체계에 관한 연구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효율적 운영 및 조직규모 적정화 방안	행정안전부

- 또한, 서울형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공공서비스에 대한 연구과제 발굴이나 컨설팅 지원이 필요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97
----------	-----

제출년월일 : 2022년 8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전문적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나. 이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나. 사무명 :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다. 추진근거

○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라. 출연의 필요성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진단, 임직원교육, 경영지도·컨설팅, 정책연구 등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지원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도모

마. 주요사업 내용

- 지방공기업 정책 개발 및 연구지원
- 지방공기업(광역+기초)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등 수행
- 지방공기업 컨설팅 지원
- 지방공기업 설립·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법정지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법정지정기관)
- 지방공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임직원 전문교육

바. 출연대상 기관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 법인설립 : 1992. 3. 2.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법정기관 전환('16.6)
- 조직 : 1단 4실 2센터 / 정원 65명 ※현원 64명
 - 이사회 구성 : 이사 9명, 감사 1명
- 시설현황 : 건물(지상6층) 연면적 $2,550 m^2$, 부지 $640 m^2$
- 위치도



청사현황



위치도

사. 소요예산(안)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78,000천원
- 산출근거 : 경상운영비 50,000천원, 사업비 28,000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예산편성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공기업담당관 공기업총괄팀 차솔비 (☎ 2133-6779)